

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고용허가서 발급번호		고용허가기간		처리기간		7일				
주된 사업장 (사업주)	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자등록번호						
	사업장명			대표자						
고용허가 기간연장 사업장	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						
	사업장명			대표자						
	소재지 □□□-□□□			연락처	전화번호					
					휴대전화번호					
					전자우편					
	업종			사업내용						
	상시 근로자 수	총	명 (내국인근로자:		명, 외국인근로자(연수생 포함):		명)			
가입 보험	[]	고용	[]	산재	[]	건강	[]	출국만기	[]	보증
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	성명(영어)			국적						
	한국 내 주소			한국 내 전화번호 (전자우편)						
	입국일			외국인등록번호						
	휴대전화번호			여권번호						
	가입 보험	[]	상해	[]	귀국비용					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, 2. 외국인등록증 사본, 3. 여권 사본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
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
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1. 고용허가서 발급번호란과 고용허가기간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.
2.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.
3. 거짓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4.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5.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※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확정 시, 이미 가입하고 있던 출국만기보험등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연장기간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료가 출금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